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조차장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

부산직할시사하구조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과세면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납기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 (일수)}} \times 365$$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과세면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준공이후 최초납기개시일로 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p>	<p>제 2 조(과세면제) ①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납기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p> <p>②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1년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 영업개시일로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p>			

현행	개정안
	<p>사유없이 주차용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 (일수)}} \times 365$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